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방안

이 현 아(서울대학교 연구교수)

I. 서론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은 기능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대상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상중심 정책은 기존의 기능중심 정책과 달리 대상이 되는 집단의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조합하고 통합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적이다.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은 기능중심 정책으로서 수요자인 학부모와 가족 관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시작과 경과,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두 정책은 상이한 정책영역이다. 우선 가족정책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아 현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학부모정책은 2009년 5월 교육과 학기술부에 학부모정책팀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학부모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거쳐 현재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명시적 가족정책의 출발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가족정책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삼고,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돌봄지원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강화와 전문성 제고의 5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학부모정책은 2009년 학부모지원팀이 생긴 이래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만들어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학교참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은 학부모친화적 학교참여 문화조성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 학부모참여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질제고,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강화를 정책목표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정책의 대상인 학부모는 가족정책의 대상인 부모와 일부 중첩된다. 일반적으로 학령기자녀를 둔 부모를 학부모라 지칭하는데, 이는 교육정책관점에서 부모를 대상화한 표현이다. 동일대상을 두고 교육정책 관점에서는 학부모가 되고, 가족정책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되는 것이다. 즉,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은 그 정책 대상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소관 부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가정과 학교의 파트너십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두 정책간 연계가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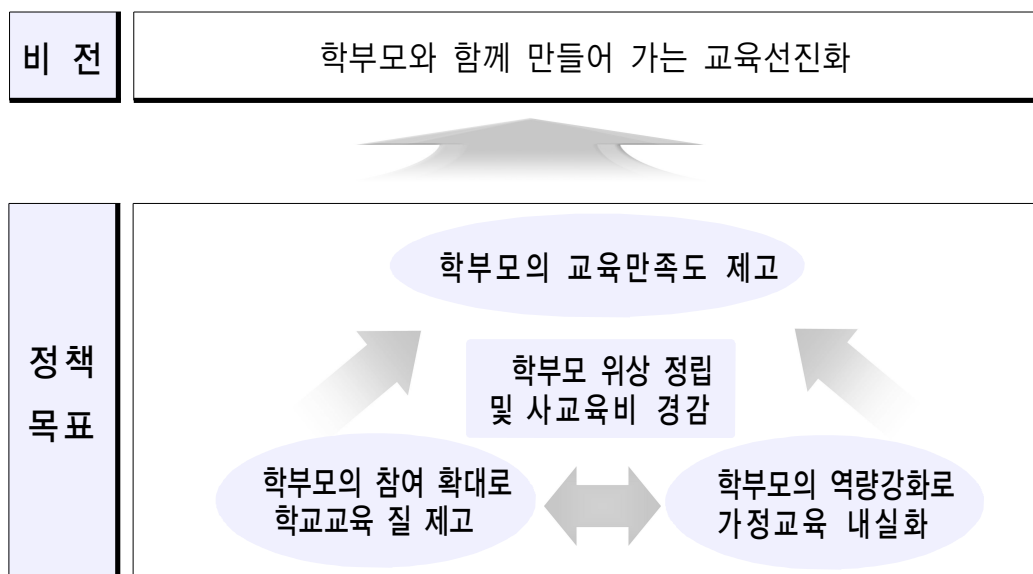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같은 대상중심 정책으로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두 정책간 연계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책영역간 통섭으로 수요자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학부모정책의 현황 분석

학부모는 학교, 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는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사결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확보, 학부모 참여부진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즉,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법제화되긴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소수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적극적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2009년 5월에 이르러서야 교육수요자이자 교육주체인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정책팀이 설치되었고, 같은해 11월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학부모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2009년 학부모정책의 비전과 목표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2009년 발표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의하면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를 비전으로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제고, 학부모의 참여확대로 학교교육 질 제고, 학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정교육내실화, 그리고 학부모위상정립 및 사교육비 경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책비전을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로 설정한 것은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학부모를 교육정책의 적극적 동반자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 방향의 전환의 의미한다. 그동안의 교사와 학교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목표에서는 교육동반자인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역량강화가 학교교육의 질과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경감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위상을 정립하고, 적극적인 학교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학부모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였다는 점, 수요자인 학부모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설계하였다는 점, 학부모정책을 교육정책의 한 범주로 보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한 노력은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학부모교육 지원확대, 학부모 지원서비스 강화의 3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표 1>).

우선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회활성화, 학교교육 참여제고, 교육정책 참여확대 등 3가지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회 구성 및 참여제고, 학부모회 역할 정립, 학부모회 운영개선 및 지원확대를 추진하였다. 학교교육 참여제고를 위한 추진내용으로는 수업공개 활성화,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을 학교교육에 활용, 교육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 참여,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시도교육청 및 평가시 학부모 지원실적 반영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교육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였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학부모교육 지원확대는 올바른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학부모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학부모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학부모교육기회 확대,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의 3가지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는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학부모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맞춤형 학부모교육, 사이버 학부모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에서 학부모교육 비중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육 콘텐츠를 평생교육기관에 보급하고, EBS를 활용한 학부모대상 원격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점과제인 학부모지원서비스 강화는 학교선택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편의를 고려한 학교방문 및 상담기회를 확대하여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을 강화하며, 학부모를 위한 법과제도 정비로 학부모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원스탑 교육정보서비스제공, 지역별 체계적인 교육정보제공, 학교별 자녀교

육정보제공 확대를 세부과제로 추진하였고, 학교방문 및 상담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 활성화, 학부모-교사간 상담기회 확대, 학부모상담사를 통한 학부모지원을 세부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부모 콜센터 운영하는 등 학부모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

<표 1> 2009년 학부모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과제1: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세부과제	추진내용
	학부모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구성 및 참여 제고 • 학부모회 역할 정립 • 학부모회 운영 개선 및 지원 확대
	학교교육 참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공개 활성화 •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을 학교교육에 활용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 참여 •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 시도교육청 및 평가시 학부모 지원 실적 반영
	교육정책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확대
과제2: 학부모교육 지원확대	세부과제	추진내용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 역량강화 •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 교육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활성화 • 맞춤형 학부모교육 제공 • 사이버 학부모교육 운영 • 학부모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에서 학부모교육 비중 강화 • 학부모교육 콘텐츠를 평생교육기관에 보급 • EBS를 활용한 학부모 대상 원격 서비스 확대
과제3: 학부모 지원서비스 강화	세부과제	추진내용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op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 • 지역별 체계적인 교육정보 제공 • 학교별 자녀 교육정보 제공 확대
	학교방문 및 상담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공개 활성화 •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 정례화 • 학부모-교사 간 상담 기회 확대 • 학부모상담사를 통한 학부모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운영 • 학부모 콜센터 운영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정책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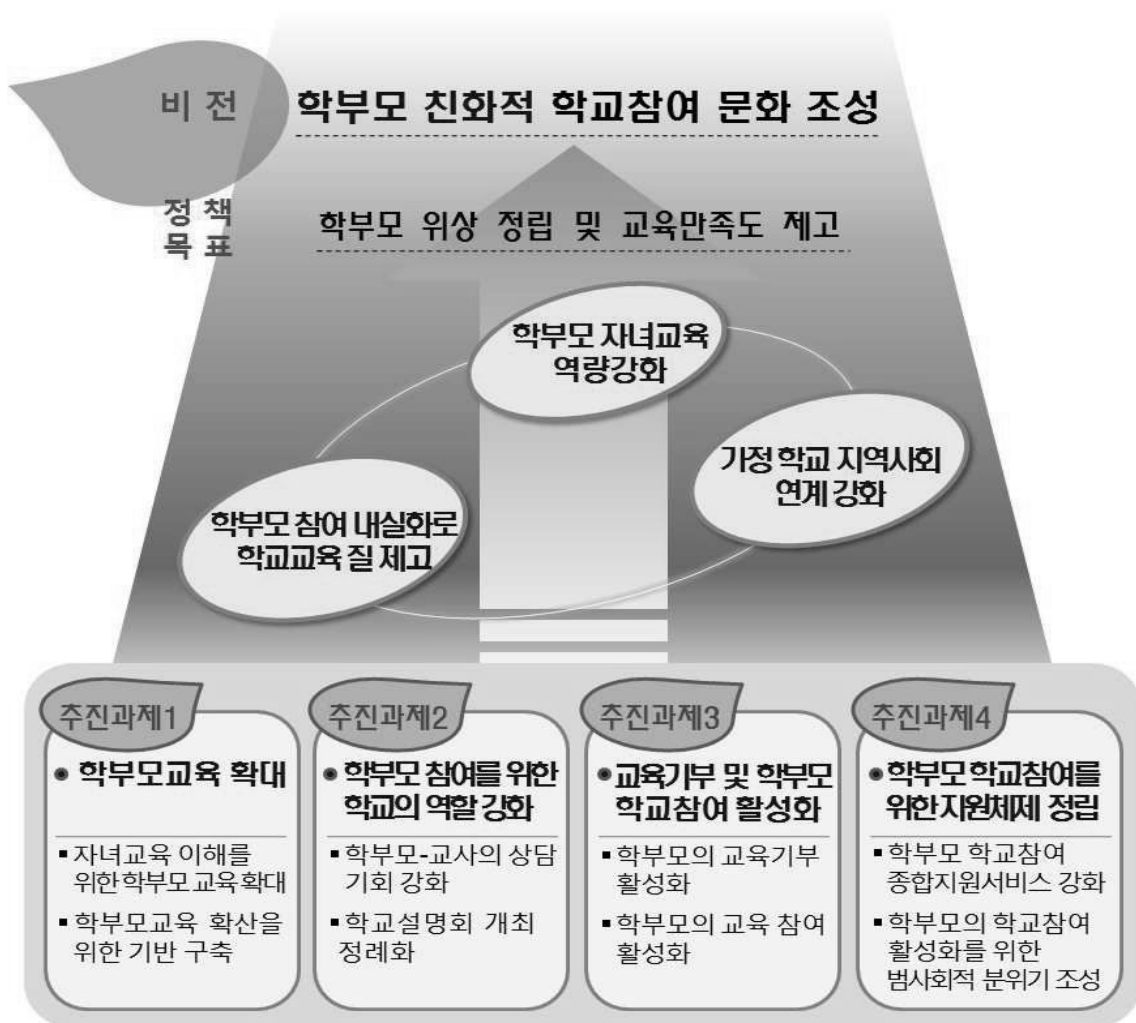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에 2009년 처음으로 신설된 학부모정책팀이 2010년에는 학부모지원과로 승격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학부모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학부모정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에 수립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2010년에는 학부모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기반이 마련되고, 학부모교육 지원체계가 정립되었으며, 학부모지원서비스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전국 초중고 2792개 학부모회가 선정되어 지원받았으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 학부모학교참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도별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상시적인 학부모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교육 지원체계가 정립되었고, 학부모상담사 제도를 전국 20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 10월부터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학부모지원정책은 특히 맞벌이 부부등 직장인 학부모참여 확대,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교육 모니터링 강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참여 및 교육 확대, IT를 활용한 효율적인 자녀교육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활성화, 학부모교육 지원내실화, 학부모 지원서비스 강화, 학부모 지원을 위한 온라인 정보제공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였고, 실제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교육 지원내실화,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상담사 운영, 학부모 지원을 위한 온라인 정보 체제 구축, 학부모교육정보 분석서비스 및 학교정보공시시스템 개선에 총 170억이 배정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를 정책중점연구소로 지정함으로써, 학부모정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의 쉼크탱크 기관이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학교-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의 설립은 학부모정책이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자리잡는 기반을 제공하고, 근거중심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2년은 학부모지원정책이 3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근거하여 학부모친화적 학교참여 문화조성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이 미흡하고, 학부모와 학교간 소통을 위한 학교방문기회가 부족하며,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참여 및 역할이 부족하며,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 <그림2>와 같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 학부모정책의 추진계획은 연초부터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이나 학교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등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교육기부형 학부모참여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시키고자 지원체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요 사업인 학부모교육 확대, 학부모참여에 대한 교육청, 학교 책무성 강화,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지원체계 정립에 총 15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그림 2> 2012년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학부모교육확대는 일부 학부모가 아닌 모든 학부모(약 1000만명)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진로지도 등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 2회 학교설명회시 학부모교육 뿐 아니라 직장으로 찾아가는 직장내 학부모교육, on-line/off-line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 및 가정의 교육기능회복을 위해 ‘밥상머리교육’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참여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한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교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일과후에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맞벌이부부나 아버지의 참여를 배려하였다.

한편 교육기부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차원에서는 자발적인 학부모 교육기부인력풀을

1) 현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확보하여 학교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학교참여 지원사업과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학부모 참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학교참여를 위한 지원체계 정립 차원에서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통합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학부모친화적인 학교참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부모정책의 현황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정책팀이 신설된 것은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동안의 교사와 학교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 학교와 가정의 파트너십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보고 학부모의 역량강화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과 교육만족도와 연결된다고 본 점은 기존의 교육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이다.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회 예산지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새롭게 시작하고,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부모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였으며,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 증진을 위해 학교설명회나 상담주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운영방식을 수요자중심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부모지원센터의 신설은 학부모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부모정책의 의의가 학교과 가정의 파트너십을 인식하고 수요자중심으로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때, 학부모정책의 대상을 학부모만으로 보는 것은 매우 협소한 관점이다.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정책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한 바, 그동안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의 주체였던 학교와 교사(학교장)가 모두 학부모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학부모정책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최상근 외(2011)에 의해 이루어진 학부모 학교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70.9%가 본인이 학교교육의 주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에 참여할 의사도 73.1%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학교교육 참여시 가장 희망하는 분야로는 학습지도활동(14.4%), 학교교육 모니터링(13.9%), 학부모교육 강의 및 수강(10.7%), 교육지원활동(10.0%) 순으로 나타나 단순한 자원봉사보다는 학습지도나 학교모니터링, 부모교육 등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참여 저해요인으로는 개인차원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8.4%)가 가장 높고, 담임교사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0.6%), 학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3%)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차원의 이유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20.6%), 교사와의 공식적인 대화기회 부족(15.9), 모임의 개최시간이 낮 시간대여서(14.1%),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해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부모들의 교육의 주체인식이나 참여의사는 매우 높고, 참여분야도 매우 전문적이거나 학교운영에 관련된 분야에 선호가 높은 데 반해, 실제 담임교사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학교에 참여할 일도 많지 않고, 교사와 공식적 대화기회가 부족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는 등 구조적인 요인을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인이 아니

라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이다. 학부모의 주체적인 학교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뿐 아니라 학교장과 교사의 인식개선과 학교의 구조가 모두 함께 학부모친화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학교와 학부모간 쌍방향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가족정책 현황 분석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2004.2.9.)이 통과되면서 명시적인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가족정책은 모자가정 등 요보호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사후적 접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보고 개별가족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가족해체, 저출산 등 가족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가족에 대한 관심과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내에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 지고, 그 전달체제로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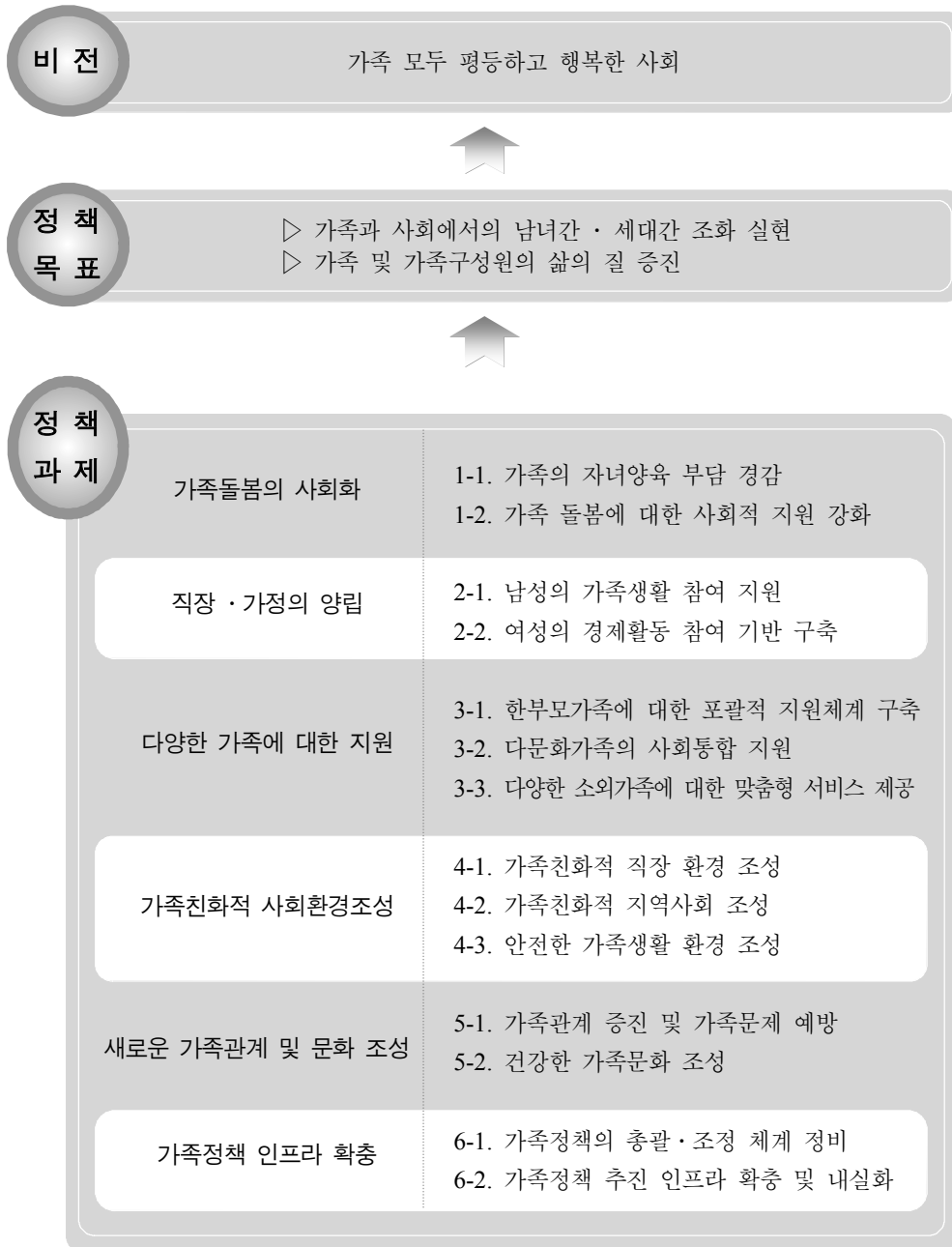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한 사후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가족의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더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을 위한 사후치료에서부터 보편적 가족을 위한 사전예방적 관점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Kamerman과 Kahn(1978)은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Zimmerman(1988)은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인 정책목적으로 선택하는 가족과 관련시켜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인 동시에 모든 가족관련 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 하나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가족을 위해 행해지는 정책으로 또는 ‘가족관점(family perspective)’을 가지는 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즉, 가족정책은 가족관점을 가지고, 가족을 단위로 고려하고, 가족의 건강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가족정책의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아래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간 조화 실현’,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립되었다.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생활에 대한 개입 및 지원,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또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범주가 명확히 가시화되었는데, 비전과 정책목표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6개 정책과제 영역의 14개 대과제, 29개 중과제, 84개의 세부과제는 정책의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가족정책을 ①가족돌봄의 사회화, ②직

장·가정의 양립, ③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④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⑤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⑥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의 6개 영역으로 범주를 규정하고, 하나의 사회정책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림 3>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족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이다. 즉 '모부자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간호제도와 가족간호휴직제가 도입되고, 육아휴직제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제 활성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뿐만아니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의 설치 및 확대를 주요한 성과로 들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 확대하였으며,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설치 및 확대는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 즉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정책의 정체성과 고유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조희금 외, 2011).

6대 영역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지역육아지원망 구축',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등 양육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가족간호휴직제('08.6) 도입으로 가족돌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08.7)으로 가족의 노인돌봄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둘째,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을 구축하였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07.12)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양육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상담·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직장 내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출산·육아기 여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였다.

셋째,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07.10) 및 시행('08.1)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를 정비하였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07.12) 및 시행('08.6)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체계적 관리방안이 수립되었고, 초기 사회적응 지원사업과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자립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노인가족을 위한 건강 및 취업지원, 장애인가족의 자립지원, 새터민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등 소외가족(노인, 장애인, 새터민, 입양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넷째, 일과 가정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관

한법률」의 제정('07.12)으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활용 등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노력이 확대되었다. 가족형 마을 모델 개발,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인식 확산, 가족친화마을을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및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한 가족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섯째, 가족·이웃 및 사회의 건강한 소통과 유대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었다.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하여 가족교육·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가족문제 예방 체계의 토대를 구비하였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여가문화의 기반 조성, 취약계층의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운영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여섯째,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확충 및 효율화가 추진되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정책의 총괄·조정체계를 정비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확충과 다기능화를 통하여 가족정책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종합적으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가족지원사업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가족정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가족돌봄 사회화의 인식과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자녀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기능의 강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돌봄기능의 사회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역할 수행의 역량 강화, 부모주권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통계와 자료들은 남성의 아버지역할, 가족역할에 있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의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치적·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 등의 과제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족가치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서 건강가정, 양성평등 등의 가치가 일상화·보편화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역할분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가동 등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특히 가족정책 추진의 인프라 관련하여,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전달체계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적 차원에서 전달체계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바, 이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간 기능조정과 통합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조희금 외,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과제를 토대로 하고, 가족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이 가족에 대한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한데 반해, 2차 기본계획은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성과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라는 정책비전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기조가 강하게 드러난다. 정책목표는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설정함으로써 생애주기관점에서 가족생활의 질을 고려하고, 사회자본으로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돌봄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5대 정책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5대 정책과제별로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비전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정책 목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과제	1. 가족가치의 확산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 자녀 돌봄 지원 강화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2. 부모역할 지원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그림 4>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첫째, 가족가치의 확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더불어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위한 세부적 과제를 강조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문화 구축이라는 또 하나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자녀돌봄지원 강화 영역에서는 시설보육과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지원,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구축 등이 강조됨과 동시에, 특히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모역할의 지원, 부모역량 강화 등이 세부과제로 규정되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의 선택권 강화, 부모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에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 취약가정 지원체계 구축 등 타겟별로 맞춤형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넷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은 직장환경과 지역환경으로 나누어 두 영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성 강화,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아젠다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영역에서는 전달체계의 확충과 더불어 전문화, 특성화, 활성화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에 설치된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기능조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은 보편적 가족의 가족위기 예방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가족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과제로 부각시켰다는데 있다. 뿐만아니라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부모의 육아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활용 등을 통해 가족의 비금전적 육아부담 완화, 가정내 보육서비스 강화를 강조하였다. 2010년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조직개편되면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등 여성가족부 내 타 정책과 가족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이라 하겠다.

IV.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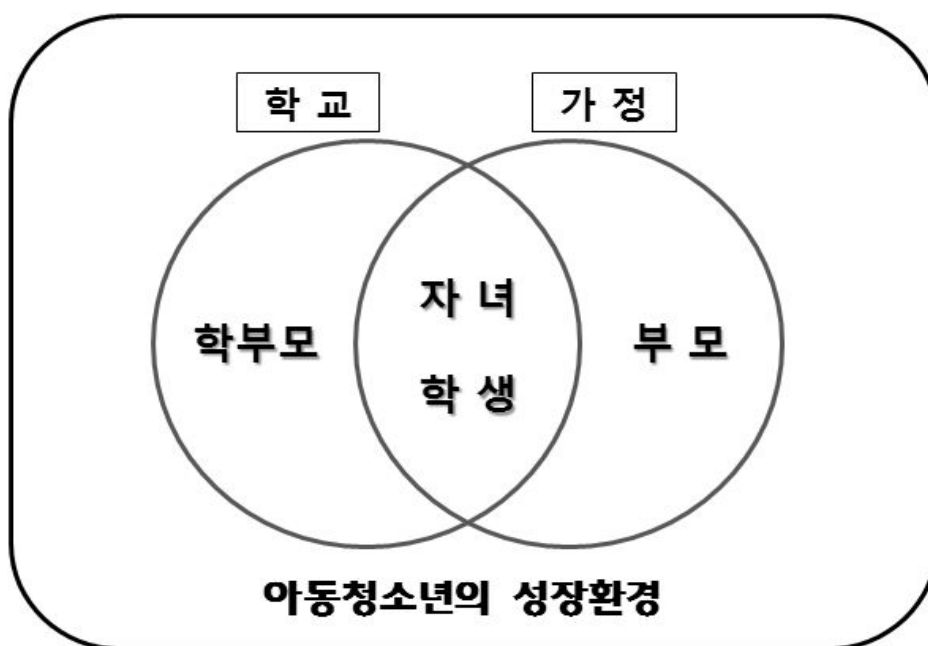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현황에 근거하여 두 정책간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계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필요성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우선 정책대상, 정책목표와 접근방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학교와 가정의 파트너십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은 기능중심 정책이 아니라 대상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실제 정책 대상도 유사한 점이 있다. 가족정책의 대상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원을 포함하며, 또 가족관계에 따라 부부, 부모와 자녀 등

을 포괄한다. 가족형태에 따라 양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부부가족, 양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한다. 학부모정책의 대상인 ‘학부모’는 ‘부모’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즉, 학부모와 부모는 모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여되는 역할에 근거한 개념이다. 학령기 자녀인 학생을 둔 부모를 학부모라 지칭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학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도 있다. 부모가 학부모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로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학부모 모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여되는 역할이라고 할 때,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자녀’라 할 수 있다.



<그림 5>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녀’는 가족정책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표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국회에서 2010년 ‘자녀돌봄지원법’²⁾이 발의될 정도로 자녀는 가족내 돌봄을 요구하는 주요 존재인 것이다. 교육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학생은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고 학급별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존재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부분 자녀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은 연계가 필요한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아동청소년기가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아동정책, 청소년정책과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지난 4월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 및 청소년정책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도,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 및 청소년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공통점으로 ‘청소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복실, 2012).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은 생애주기상 구분으로 개별화된 정책대상이 될 수

2) 자녀돌봄지원법은 2012년 2월 ‘아이돌봄지원법’으로 법명이 바뀌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있는 반면에, 학부모나 부모는 자녀나 학생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역할로 부여되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즉, 학부모와 부모는 자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동일한 역할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환경이자 생활의 장으로서 가정과 학교가 모두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역할 또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부모역할과 부모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은 자녀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 상호작용기술과 양육기술 훈련, 부모의 자기이해 및 통찰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교육을 한편에서는 학부모교육의 이름으로, 또 한편에서는 부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 같은 목표, 같은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두 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쉽게 이해된다. 학부모정책은 학부모친화적 학교참여 문화조성을 정책비전으로 하고 있고, 가족정책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의 지향점이 유사하고, 학부모친화적이거나 가족친화적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사후치료적인 방식보다는 사전예방적인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두 정책 영역은 정책의 목표와 접근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관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고, 학교와 가정이라는 영역의 구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더욱더 요구된다 하겠다.

뿐만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교육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정과 학교의 파트너십에 대한 요구는 가족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두 정책간 연계 지점이 바로 ‘학부모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정책간 연계는 필연적이다.

최근 학교폭력문제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학교-가정-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신고조사체계 개선,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접대책과 함께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내용의 근본대책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지난 2011년 7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가정-사회-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선진화’를 다룬바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높은 지적역량에 비해 인성과 창의성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균형적 인재양성을 위한 가정과 사회, 학교의 공동책임과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학부모-교사간 소통 강화, 교육정책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함께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1).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학부모와 부모가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해서 명시적인 정책대상이자 정책수요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학부모정책은 그동안의 교사와 학교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의미에서 획기적이다.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가족을 위해 행해지는 정책으로 개념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관점(family perspective)’을 가지는 정책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적이며, 그동안 문제가 가족에 대한 사후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가족의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다. 두 정책 모두 그동안의 공급자 관점의 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그 속에서 연계 가능성이 보인다. 앞서 정책의 대상과 목표, 접근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2.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방안

마지막으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방안을 내용 측면과 전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가 필수적인 영역은 부모교육과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영역이다. 앞서 연계의 필요성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은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녀양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 많은 부모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름이 부모교육이든 학부모교육이든 내용이 충실하고, 기회가 충분하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부모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질적으로 충실한가, 또 부모교육의 기회가 양적으로 얼마나 충분히 주어지는가이다. 사실 같은 이름의 부모교육이라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실제 양적으로 부모교육기관이나 수가 늘어난다고 항상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범사회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 학부모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지나친 일중심문화를 성찰하고, 가족중심으로 삶의 무게를 이동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삶의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회전반의 의식구조를 일과 학업, 성과중심에서 가정과 인성, 공동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범사회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는 물론 가족친화적 기업제도 개선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기반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학부모친화적인 문화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동반자같은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일중심사회의 중심이자 기준인 일의 영역이 변해야 가족친화사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그간의 가족정책의

성과로 육아 휴직, 휴가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실효성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유연근무제 확산이나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2011)에서 ‘학부모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가족친화-학부모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밥상머리교육’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밥상머리교육의 주요 내용은 가족시간확보와 가족식사공유, 가족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족 사랑을 느끼고, 기본적 인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다(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2). 가정기능의 회복과 가족가치 확립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으로도 볼 수 있으나,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면 교육정책이자 학부모정책이 되는 것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밥상머리교육의 날로 정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사랑도 키우고, 인성교육도 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밥상머리교육은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이 연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이 함께 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정책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수요자인 부모와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연계 필요성이 있고 실제 연계가 가능한 정책과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가족관점, 부모관점, 학부모관점,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정책을 설계한다면 정책연계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둘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방안을 살펴보자. 가족정책의 대표적인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최근 학부모정책의 시작으로 학부모정책이 전달체계로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다. 2012년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 148개소 있고,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 다양한 가족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6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2011년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등록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운영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가족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사회구현 기관을 비전으로 가족정책 핵심 허브기관으로서 역할강화, 가족정책 서비스의 개발 및 품질향상,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촉진 및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목표로 건강가정사업지원, 다문화가족사업지원, 가족친화지원센터사업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사업운영,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 훈련, 전국 센터 지원 및 평가, 전국 센터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www.kihf.or.kr).

학부모지원센터는 2012년 현재 75개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정보제공, 학부모 수요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상담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학부모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학부모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정책 개발 및 지원, 자녀교육 정보제공, 학부모 등 관계자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특히 학부모를 지원하는 전국단위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 허브 기능, 홈페이지, SNS와 연계한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시도학부모지원센터는 크게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학부모교육 운영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두 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차원과 전국단위에서 모두 연계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교육과 상담 및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내용과 대상이 많은 부분 중첩될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랜기간 사업과 경험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인력풀이 보다 더 풍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학부모지원센터에 제공해주고,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청이나 학교단위로 학부모를 모집하여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해도 좋을 것이다.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하거나 인력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상호연계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MOU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사업연계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지역센터간 연계는 지역에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지역센터의 주요기능중 하나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의 전달체계간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허브역할을 하는 중앙기관간 연계도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더 나아가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연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센터간 벽을 허물고, 부처간 경계를 뛰어넘어,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부모와 자녀, 학부모와 학생, 가족의 관점에서 정책 영역간 통섭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부모지원정책 2011년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
이복실(2012),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 및 청소년정책의 연계방안,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제6차 포럼 자료집.
조희금, 송혜림, 이승미, 라휘문, 박세경, 서지원, 이현아(2011), 가족정책 성과평가 및 가족정책 과제 개발, 여성가족부.
최상근, 김형주, 진선미(2011), 2011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2), 밥상머리교육 강사시범교육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Kammerman, S. B., & Kahn, A. J. (1978). Family Policy-Government and Families o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Zimmerman, S. L.(1988).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etical approaches, New Bury Park: Sage.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방안

권 혜 진(나사렛대학교 교수)

현대사회의 변화는 자녀양육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정과 학교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 가정과 학교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각각 고립화되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가정과 학교는 아이들의 건전한 발달과 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학부모는 대학 서열화와 입시중심의 교육현실에서 자녀의 성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사교육을 구매하는 소비자 역할에 주력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양육과 교육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건전한 발달과 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아래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발표자는 현재 실시되고 있고 학부모 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부모 정책과 가족정책을 내용적 측면과 전달체계적 측면에서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의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보다 생산적인 연계방안을 산출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자 중심관점에서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은 대상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실제 정책 대상도 유사한 점이 있다. 가족정책이 가족생활주기나 가족형태에 따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부모정책은 대상을 ‘학부모’로 단일화하고 있다. 학부모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부모정책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녀의 발달주기를 반영하여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내용이 다르고 학부모참여에 대한 동기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내용이 정책 과제 설정에 반영되어야 학부모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정책은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른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부모정책은 가족정책과 연계하면서도 학부모들이 갖는 독자적인 정책요구도 감안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학부모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부모참여를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연구와 현재 학부모참여 현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현재 학부모참여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 어머니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모참여 기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에게는 학교 참여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다문화 학부모들의 경우 학부모참여를 통한 학교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사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실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이 주로 참여하는 학부모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여전히 학부모정책이 정책의 수행기관인 학교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도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책임과 의무 차원에서 학교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및 기업이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가 교사들만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그 해결방안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미국은 200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 Act. 일명 No Child Left Behind Act.)에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도 2008년부터 학교·가정·지역의 연대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학교지원지역본부사업은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중학교와 지역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기업, 국가 차원의 인식의 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정책이 학교단위로 고립되어 추진될 경우 자녀들의 학업지도 요구 중심으로 흐르기 쉽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올바른 부모상의 정립을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신념을 갖고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는 개별가족의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넘어서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건강하게 자리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부모와 부모가 이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대상자이나 수요자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학부모정책이나 가족정책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부모들이 정책실행 효과나 수혜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더 없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혜나 효과를 정책의 대상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체감하는 것이다.